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

성명		주민등록 번 호			
자녀학생명	학년 반 성명:			사 진 (3×4)	
전화		H.P			
주소					
등록기준지					
자격확인	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	
	②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	
	③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	
경력	사회경력,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			직 업	
입후보 소견					

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제12기 관촌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.

2019년 3월 일

입후보자 성명 ①

관촌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